

2008. 3.~4.

대법원 공정거래사건 판결 요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 윤인성

- 대법원이 2008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사건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그 중 후순위대출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의 현저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8.3.27. 선고 2005두9972 판결, 불이익 제공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다405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두259 판결 (상고기각)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일리조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사안 및 쟁점]

- 원고는 1994년 12월 1일 합동회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합동회의 유기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1996년 6월경 위 영업위탁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합동회로부터 두 종류의 유기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합동회로부터 이 사건 유기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인건비 등 상승을 이유로 운영관리비를 월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합동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년 8월부터 위탁료 전액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대방인 합동회에 대하여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한 불이익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두9972 판결 (파기환송)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사안 및 쟁점]

- 원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에스케이씨 주식회사는 1999년 1월 30일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2000년 10월 6일에 각각 계열회사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후순위특약 하에 총 1,400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의 차입자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당시 재무·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각 후순위대출의 정상금리는 실제 적용된 금리보다 최소 2~3% 높은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후순위 대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등을 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후순위대출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의 현저성 판단 기준 등이 주로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부와 반대금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한 자금 또는 자산거래에 있어서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당해 거래행위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 인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유추·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대출의 기준금리를 정상 금리수준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정상금리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방식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전제조건이나 적용된 수치의 타당성까지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후순위대출 당시 에스케이생명의 신용등급이 BB+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고,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증권 주식회사나 ○○증권 주식회사는 생명보험회사인 에스케이생명과는 회사의 성격이나 자금운용 방식이 같지 않으므로 위 회사들의 신용등급과 비교하여 에스케이생명의 신용등급을 BB+라고 상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보증공모사채의 평균수익률에 무보증사모사채, 신용등급 BB+, 후순위대출을 이유로 적용된 개개의 가산 금리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유추·산정하여 산출한 위 기준금리를 이 사건 후순위대출에 적용 가능한 정상금리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 이 사건 후순위대출시 적용된 금리가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 신용등급별 시장금리수준과 그 변화 추이 등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유추·산정한 위 기준금리가 정상금리수준으로서 타당성을 갖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후순위대출의 금리가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가 내세운 적정금리산출방식에만 바탕을 두고 이 사건 후순위대출의 금리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상금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 없이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상고기각)

원고, 상고인	쇼와덴코 케이케이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사안 및 쟁점]

- 원고가 1992년 5월부터 1997년 말경까지 소외회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흑연전극봉을 수출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8.19. 선고 2002누6110호로 원처분 중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의 일부인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피고는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3.24. 선고 2004두11275호로 상고기각을 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06.11.6. 원고와 소외회사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요지를 발췌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의결요지서와 한국어로 된 의결서 정본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일본 주소로 국제특급우편 및 팩스로 발송하고, 2006년 11월 9일 정부과천청사 게시판 및 피고의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역외송달에 대한 법리 오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송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 사건의 역외송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 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와 소 외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자들 간의 조사 협조의 정도, 원고가 피고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과징

찰에 대하여는 당해 낙찰업체에 대한 과징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점, 기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944 판결 (상고기각)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사안 및 쟁점]

- 원고 등은 국내 지게차 시장의 약 73%를 점유하는 회사들인데, 이들은 2000년 1월경부터 2004년 11월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내에 판매하는 지게차와 부품 등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의 2000년 내지 2004년의 가격인상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대우종합기계주식회사(현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가 지게차 시장에서 행한 이 사건, 부당한 가격인상 공동행위가 약 5년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당공동행위가 행해진 기간 중의 회사별 관련 매출액에 3/10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다시 재결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 금액의 20%를 감액하여 과징금을 정한 것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405 판결 (상고기각)

원고, 상고인 한국별정통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사안 및 쟁점]

- 피고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000년 9월 1일 원고와 사이에 2000년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01년 8월 25일 원고에게 별정통신사업(가입자모집) 영업업무위탁 제도 변경 통지를 한 이후 2001년 10월 초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별정통신 3개사는 2004년 1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7월 22일 피고에게 경고조치를 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요구와 그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1.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그 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과 거래내용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후,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가는 통화 수수료가 감소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업무위탁수수료를 토대로 가입자들에게 통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면

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의 영업수익은 주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가입자들에게 대한 업무위탁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업무위탁수수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환불대행서비스계약에 의하여 가입자들에게 할인된 요금 부분을 공제하여 지급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될 무렵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서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외전화 사업자간의 경쟁격화와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과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정 시외사업자의 사전선택제 모집을 조건으로 시내역무상품에 대하여 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02년 3월 28일경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통화요금 할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부 고시가 시행된 점,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시외전화가입자들에게 시내전화역무인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을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는 수수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위 정보통신부 고시에 부합하는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해진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통화 수수료율이나 지급기간이 변경 전 계약의 그것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고 지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원고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변경계약에서 정한 지급기간인 36개월간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별정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개선에 따른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등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요구와 그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